

영등포구의회  
제1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개정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7. 11. 29.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개정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06.1.11, 2007.5.11)으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법규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 개정내용

- 조문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제16조”로 개정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제13조의4”를 “제16조”로,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이상”을 “19세이상”으로 개정

- ※ 참고사항 1. 지방자치법 16조(따로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따로 붙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2007. 5. 11) 제16조에서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11. 29.

보 고 자 : 김 병 욱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13조의4</u>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_____            _____ <u>제16조</u> _____            _____            _____.</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u>제13조의4</u>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u>20세이상</u> 200인 이상으로 한다.</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_____  <u>제16조</u> _____            _____            _____ <u>19세이상</u>            _____.</p>